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5
----------	------

제출년월일 : 2006. 4.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하여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7조의3)
- 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택을 분리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제법규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1003(2005.5.20), 5233(2005.12.7), 676(2006.2.3)
-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다.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이하“구세”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동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동조제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동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7조의3 제목 “(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을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공포”를 “시행”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

기존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의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호에서”로 하며,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으로 하고, 단서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3조중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제4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제6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제7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

10조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제1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2조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4조제1항중 “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15조제1항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을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으로, 동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6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7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21조 및 제22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세법</u>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u>서울특별시종로구세</u> 의	제1조(목적) ----- 「 <u>지방세법</u> 」 -----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 <u>서울특별시 종로구세(이하</u>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구세”라 한다</u>).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	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 <u>각 호의 어느 하나</u>		
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평생교육법</u> 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1. 「 <u>평생교육법</u> 」		
2. <u>한국노동교육원법</u>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2. 「 <u>한국노동교육원법</u>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u>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5. 「 <u>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u> 」		
미술관				
6. <u>도서관및독서진흥법</u> 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6. 「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u> 」		
7. <u>과학관육성법</u> 에 의하여 등록된 과	학관	7. 「 <u>과학관육성법</u> 」		

현행	개정안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u>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략) 3. <u>문화재보호법</u> 및 <u>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u>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u>문화재보호법</u>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의3(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u>문화예술진흥법</u>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u>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u>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u>문화재보호법</u>」 — 「<u>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u>」 —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재보호법</u>」 및 「<u>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u>」 — ②「<u>문화재보호법</u>」 — 제7조의3(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u>문화예술진흥법</u>」 — 「<u>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u>」 — 시행 — ②「<u>문화예술진흥법</u>」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안에서 「<u>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u>

현행	개정안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 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의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부가가치세법」 ----- ----- ----- ----- ----- ----- 「주택법」 ----- ----- 「임대주택법」 ----- ----- ----- ----- ----- 각 호에서 -----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

현행	개정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2.~3. (생략)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 1.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2.~3. (현행과 같음)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철도법」 -----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 ----- ----- 「지방세법」 ----- -----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u>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u>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 (생략) <u><신설></u>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u>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u>」----- ----- <u>각 호</u> <u>에서 정하는 바</u>-----, 1.~2. (현행과 같음) ② 「<u>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구청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